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1015 호 2016. 7. 7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1호[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2호[도로명주소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3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5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624호[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643호[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0

안
내

-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
회
람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1호

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지적측량대행자 명칭 :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
2. 사업지구 명칭 :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
3. 사업위치 및 면적
 - 가. 사업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16-6번지 일원
 - 나. 면적 : 78,329 m²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2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18(호계동)외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*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시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7. 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증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시유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9-15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18(호계동)	2016. 07. 07	기존 희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본기하므로 일련번호(병식)의 하위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. 08. 20	
2	울산광역시 북구 쇠정동 14-8-4	울산광역시 북구 쇠동15길 52(쇠정동)	2016. 07. 07	차도로 허름의 엑자명이며 주체가 경주이 능이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.	2010. 04. 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9	울산광역시 북구 청내1길 7-4(신천동)	2016. 07. 07	기존 차현마을 청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. 08. 09	
4	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동 274-3	울산광역시 북구 새종터7길 3(검포동)	2016. 07. 07	신한 일대기 삼포기행 당시 새장터(소금짜는장)로 사용하여 새장터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. 01. 12	
5	울산광역시 북구 송선동 1252-3	울산광역시 북구 송선산업단지 4(송선동)	2016. 01. 01	송산 산업단지 내부도로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.	2015. 02. 02	
6	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동 1000-19	울산광역시 북구 성내1길 12-1(암포동)	2016. 07. 07	예로부터 전희재 내려오고 혼재로 사용중인 마을이므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. 01. 05	
7	울산광역시 북구 경동신도시길 62B 7L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증정2로 252(산하동)	2016. 07. 07	산하지구 증정을 시니는 의미로 두 명칭을 혼용하였다.	2014. 05. 07	
8	울산광역시 북구 어월동 109-1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825(어월동)	2016. 07. 07	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. 08. 20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3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멀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18(호계동)외 2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 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7. 7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번호	도로명주소	총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18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9-15	2016-07-07	건축물 멀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성내1길 12-1	울산광역시 북구 업포동 1000-19	2016-07-07	건축물 멀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825	울산광역시 북구 어울동 109-1	2016-07-07	건축물 멀실	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6 - 624호

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6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긴급복지지원의 “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”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(안 제2조14호) 개정

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복지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지원과

☞주소 : 우)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

☞전화번호 : 052-241-7635, 팩스번호 : 052-241-7609

6. 참고사항

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 되어 있으며, 복지지원과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
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643호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및 『행정대집행법』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·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에 적극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한번만 연장(안 제3조 제3항)
- 나.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 삭제(안 제11조 제2항)
- 다.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사용자 미철거 설비 및 홍보물 철거(안 제16조 제3항)
- 라.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일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 “각호의 1”을 “각호의 어느하나”로 “전염병 질환자”를 “감염병 환자”로, 기타를 “그 밖에”로 수정(안 제10조, 제11조제1항, 제20조)

3. 근거법령 :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
- 나.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및 「민법」 제750조
- 다.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, 제3조
- 라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4. 입법문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.**5. 의견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문화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- 라. 제출처 : 우 44248/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, 북구문화예술회관
(전화번호 : 052-241-7352, 팩스번호 : 052-241-7359)

6. 참고사항

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※ 북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참조

의 견 제 출 서

조례명	『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일부조례안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
	주 소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

『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일부조례안에 대하여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, 제11조, 제20조 “각호의 1” 을 “각호의 어느하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제3항 전단 중 “구청장이” 를 “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0조제1호 중 “전염성 질환자” 를 “감염병 환자”로,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치 및 운영) ① · ② (생 략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.	제3조(위치 및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
제10조(사용제한) ----각호의 1-----	제10조(사용제한) ----각호의 어느하나-----
제11조(허가취소) ① - 각호의 1-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제11조(허가취소) ① -각호의 어느하나- <u><삭 제></u>
제16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와 홍보물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 및 홍보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입의로 처분할 수 있다.	제16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-----. <후 단 삭제>
제20조(입장제한) ----- 각호의 1-- ---- 1. 전염성 질환자, 만취자, 소란 행위자 2. 3. 기타 구청장이 -----	제20조(입장제한) -----각호의 어느 하나-----. 1. 감염병 환자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구청장이 -----